

보결 수업에 관한 규정

개정 2025.12.18.

수지초등학교

수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담임교사 및 교과전담교사의 출장, 연가, 연수 등에 의한 결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급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된 분위기 조성 및 안전 생활을 도모하며 교사들의 균형있는 보결 수업 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침】

1. 수업 결손 요인 (병가, 특휴, 연가, 출장, 공가, 지참, 조퇴.이 발생하면 즉시 보결 수업 담당자를 배정하여 해당 학급의 수업 결손을 방지한다.
2. 보결 수업을 배정받은 교사는 해당 학급의 교육과정 시간 계획에 의거 수업을 충실히 해야 한다.
3. 보결 수업을 배정받은 교사는 해당 학급 학생의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4. 일정 기간 이상의 결강이 발생한 경우는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활용한다. 단 부득이 시간강사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결수업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5. 예견된 수업 결손 발생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는 보결 수업자가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6. 보결 수업 진행 상황은 전체 공유 문서를 통해 상시 공유하고 관리한다.
7. 보결 수업 시간표는 나이스 시간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 【보결수업 발생 시 처리】

시간강사를 채용하지 못하여 부득이 보결수업을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 보결 수업에 임한다.

1. 보결 발생 사유가 있는 교사는 결강해야 할 사유· 발생 하루 전에 나이스 근무상황을 결재를 득한다.
2. 나이스의 「결보강처리」를 담당자가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다. (비고란에 사유를 꼭 기재한다.
3. 긴급히 결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감과 학년부장에게 연락하여 보결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4. 보결이 발생되면 담당자는 보결수업 규정에 의해 보결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교사를 배치한 뒤

해당자에게 미리 통보한다.

5. 우선순위에 있는 교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다음 순서의 교사를 배치하고 통보한다.
6. 「결보강처리」 시에는 보결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확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4조 【보결교사 배정원칙】

수업 보결이 발생 시 수업 보결 담당교사 배정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1. 배정 방법

- 가. 배정 시 1~6학년교사 (전담교사 포함)를 보결 수업 배정 횟수가 적은 순서로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보결 배정은 1→2→3→4→5→6→전담 순으로 한다.
- 나. 1~2학년 4교시 보결 수업 발생 시 해당 학년 담임교사와 해당 학년을 지도하는 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 다. 1~2학년 담임교사는 급식지도를 위해 3~6학년의 4교시 보결수업 배정에서 제외한다.
- 라. 급식 지도 보결 배정은 전담 교사를 우선 배정하되 전담 교사 배정이 힘들시 옆 반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마. 담임(전담)교사 보결 배정이 어려운 경우 교감, 교장 선생님을 배정할 수 있다.
- 바. 담임(전담)교사 및 계약직 교원 보결 배정은 3일 이상 보결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2. 담임교사의 보결 사유 발생 시

- 가. 1일 4시간 이내 보결 사유 발생 시 해당일 (주) 교과전담 수업과 교차 운영할 수 있다.
- 나. 2일 이내 보결 사유 발생 시 수업이 없는 교사로 순번을 정하여 배정한다. 또는 시간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3. 전담교사의 보결 사유 발생 시

- 가. 1일 4시간 이내 보결 사유 발생 시 담임교사가 보결 수업한다.
- 나. 2일 이내 보결 사유 발생 시 담임교사가 보결 수업한다.

4. 계약직 교원의 채용

- 가. 3일 이상의 담임(전담) 교사의 보결 사유 발생 시
 - 1) 3일 이상 담임(전담) 교사의 부재 예상 시 계약직 교원을 채용한다.
 - 2) 계약직 교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4조 2항 담임 교사의 보결 사유 발생시, 3항 전담교사의 보결사유 발생시>에 근거하여 보결 교사를 배정한다.
- 나. 1개월 이상의 담임(전담) 교사 결원 시

- 1) 1개월 이상 담임(전담) 교사의 부재 예상 시 계약제 교원을 채용한다.
- 2) 해당 기간 동안 계약직 교원 (학급 담임)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지초 교원 인사 규정 제3장 16조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수지초 교원 인사규정>

제14조 【학급 담임 결원 시 인사이동 고려 사항】 학급수 변경,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담임 결원 시 담임 배정은 다음 순으로 한다.

1. 1순위: **복직 교사**
2. 2순위: 희망하는 전담 교사
3. 3순위: 본교 경력이 적은 전담 교사
4. 4순위: 본교 경력이 적은 전담 교사 중 생년월일이 늦은 자

제5조 【사전 준비】

1. 담임교사는 학습단원, 준비물,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인계함으로써 보결 수업자가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담임교사 부재 시 학년에서 협조하여 준비한다.
2. 보결 수업시간표는 **나이스 반별 시간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 【보결 결과】

보결교사는 수업이 끝난 후 나타난 문제나 특이사항 결과를 학년부장에게 알려 학생지도시 참고로 한다.

제7조 【보결교사 역할】

1. 보결수업교사는 학생들의 안정된 분위기 조성 및 안전 생활을 도모하며, 해당 학급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2. 아침 활동 및 아침 맞이 지도는 동학년 협조하에 지도한다.
3. 아침 출결 확인은 1교시 보결 교사가 확인한다.
4. 보결 교사는 결보강 처리에 따라 **나이스 반별 시간표**에 맞게 수업을 진행한다.
5. 마지막 교시(활동) 보결 교사는 **하교지도 및 학급 문단속을 한다.**

제8조 【보결수업 수당 지급】

1. 보결수업 수당은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 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수업을 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 보결 수당 편성하여 지급한다. (교원 수업보결수당 지침 개정내용. 2023 3.1 이후 적용)
2. **1일간 학급 담임을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급 관리의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한다.**(1일 1시간 이내 인정, 2023 3.1 이후 적용, ※ 경기도교육청 계약직교원 운영 지침 운용)
3. **1일간 학급 담임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점심 시간을 학급 관리 시간으로 인정한다.(40분 이상을 1시간으로 인정)**
4. 보결 수당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한다.

5. 보결수업교사에게는 학교 예산 범위내에서 학교 회계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2026학년도 보결 수당 시간당 20,000원)
6. 보결 수당은 학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 【유치원 보결수업 수당 지급】

1. 보결수업 수당은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 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수업을 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 보결 수당 편성하여 지급한다. (교원 수업보결수당 지침 개정내용. 2023 3.1 이후 적용)
2. **1일간 학급 담임을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급 관리의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한다.**(1일 1시간 이내 인정, 2023 3.1 이후 적용, ※ 경기도교육청 계약직교원 운영 지침 운용)
3. **1일간 학급 담임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점심 시간을 학급 관리 시간으로 인정한다 .(40분 이상을 1시간으로 인정함)** (교원 수업보결수당 편성 지침(2022. 11.)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26642(2025.11.13.)
4. 보결 수당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한다.
5. 보결수업교사에게는 학교 예산 범위내에서 학교 회계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2026학년도 보결 수당 시간당 22,000원)
6. 보결 수당은 학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7. 학기 중 방과후과정 대체수당 지급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부 칙

1. 본 학교 규정은 2026학년도부터 3월1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학교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원 수업보결 수당 지침 및 수지초 인사위원회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